

10問^문10答^답으로 알아보는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안내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 안내서는 사업자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
안전관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용품 출시 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 등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용품 제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품들이 「환경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먼저,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할 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규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용품은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들로 이를 아래 표와 같이 용도와 제품군으로 구분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 없는 용품이더라도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인 경우는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용품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제품군
완구류	유아용장난감	오목이, 딸랑이, 뽀뽀이, 치아발육기, 모빌류, 촉각놀이완구
	놀이용장난감	플라스틱인형, 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럭류, 목재완구, 점토완구, 가루놀이용품, 풍선류
	교육용완구	교구놀이, 퍼즐류, 실험·학습완구
	게임기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승용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미디어완구	악기류, 영상완구, 음향완구
	롤플레이완구	변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물놀이용품	튜브, 물놀이용품,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구
	악세서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품, 발목장식품, 소매장식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생활용품	수유용품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위생용품	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품용기	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화장품	로션·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크업류, 립케어, 향수
	세정제	샴푸, 바스, 비누류
	안전용품	카시트, 어린이보호장치류
	승용제품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의류/가방류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가구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스포츠/여가용품	공, 글러브,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쌍쌍카, 야외용매트, 기타 어린이 운동용품
문구/도서류	문구용품	공책류, 볼펜, 샤프·연필, 싸인펜,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필통, 기타 문구용품
	회화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공예용품	종이접기·공예, 점토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색종이류, 기타 공예용품
	도서류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스케치북, 학습지류
놀이기구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물놀이기구	실내 물놀이욕조
	놀이방매트	실내 놀이용 바닥매트



저는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오뎅이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네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제조사)께서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각 절차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제조하려는 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인지와 그
함유량 등이 법정 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하려는 용품이 만약 위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했다면 이를
표시방법 규정에 맞게 제조하려는 용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위해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생산 제품의 재질에 함유될 수 있는 50여개
환경유해인자 내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기준 초과시 해당용품이
언론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행해야 할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는 총 4개 물질로 물질별 법정 제한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이 4개 물질은 타 환경유해인자와 비교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가 규제물질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용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프탈레이트류 2종(DNOP, DINP), 목재 용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TBT, 잉크 용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노닐페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규제합리화 조치로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부 고시 제2019-201호)」의 프탈레이트류(DNOP, DINP) 허용기준을 준수한 용품은 환경부 프탈레이트류(DNOP, DINP)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부의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과 내용

고유 번호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CAS 번호)	제한내용	용도
12-9-1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 \times 10^{-1} \mu\text{g}/\text{cm}^2/\text{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 \times 10^{-2} \mu\text{g}/\text{cm}^2/\text{min}$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2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 \times 10^{-1} \mu\text{g}/\text{cm}^2/\text{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 \times 10^{-2} \mu\text{g}/\text{cm}^2/\text{min}$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3	트라이부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688-73-3)	트라이부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목재 제품)
12-9-4	노닐페놀 (Nonylphenol, 025154- 52-3)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잉크 제품)

※ 출처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0호, '19.12.10)



두 번째로 이행해야 할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될 수 있는 플라스틱, 잉크, 목재 재질에 해당하는 용품으로, 그 표시방법은 위 환경유해인자 4종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께서 제조하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었다면 아래 표시도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인증 또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위 표시도안 규제를 면제받습니다.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도안

예시 1)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사항			
물질	함량	기준	
DNOP	불검출	전이량 $\mu\text{g}/\text{ml}/\text{min}$	경구 9.90×10^{-1} 경피 5.50×10^{-2}
DINP	불검출		경구 4.01×10^{-1} 경피 2.20×10^{-2}
TBT	해당사항없음		0.1%
노닐페놀	0.02%		0.1%

예시 2)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DNOP 0.03 mg/kg, DINP 0.02mg/kg

※ 출처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2호, '17.12.26)



끝으로 ‘위해성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위해성평가의 사전적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 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해성평가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유해성 확인 → 용량-반응평가 → 노출 평가 → 위해도 규명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해성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을 적용 받지 않지만, 환경부의 자체적 위해성평가에서 그 기준이 초과했다면 환경부로부터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받을 수 있고, 그 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대상인 환경유해인자는 총 263종이나, 263종 전부를 평가할 필요성은 없으며, 용품의 용도(플라스틱, 잉크, 목재)와 사용성 등을 고려해 보통 50개 내외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032-560-7126)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창구(1670-5280, 내선 2번)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용품 제조자인 제가 용품 출시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이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저희 회사 또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을 두었는데, 이는 사전적 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이 아닌 사후적 관리 미흡으로 처벌하는 벌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벌칙 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첫 번째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 법정기준' 초과로 환경부 판매중지나 회수 명령을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기준을 초과한 위 환경유해인자를 사업자가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표시도안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 출처 :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그럼 제조하려는 어린이용품에 어떤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고, 그 환경유해인자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께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MSDS가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MSDS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MSDS에 기재된 화학물질이 환경부의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263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검토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표와 같으며,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문의는 위 7페이지에 언급한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품 시험분석기관명 및 연락처

시험분석 기관명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 031-428-7354
FIT시험연구원	043-711-8887



환경부가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창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 관련 환경규제, 규제 이행방안,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안 등을 상담해주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 및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1670-5280(내선 2번)이며, 대면상담을 원할 경우는 위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사전 약속을 잡으신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 등이 환경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나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매년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품 2천여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용품들에 대해 위 질의 답변에서 언급한 1.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시험, 2. 표시도안 부착 여부 확인, 3. 위해성평가를 수행합니다.

위 3가지의 시험·검사에서 규정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해당 용품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용품에 대해 판매중지, 리콜 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온-오프시장에서 불법 어린이용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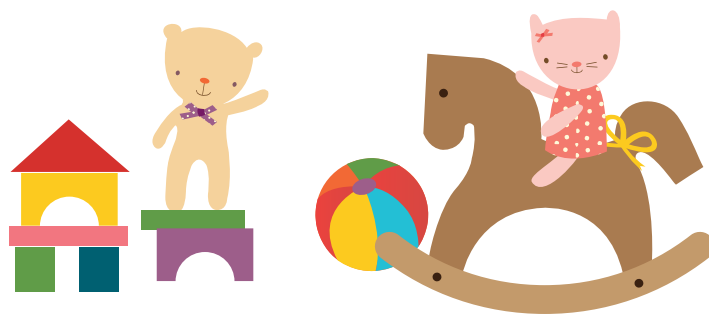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품 기획부터 판매·유통 단계까지 정부가 컨설팅(환경유해인자 시험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영세한 업체가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 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은 물론 제조 공정 진단 및 제품을 홍보해주는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3~4월에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창구(☎ 1670-5280, 내선 2번)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창구



1670-5280(내선 2번)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11.